

# 개물림 사고에 대한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

- 미국의 개물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 경 희\*\*·심 영 주\*\*\*

## 차 례

- I. 문제의 제기
- II. 개물림 사고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에 관한 검토
  - 1. 일반법의 규율
  - 2. 특별법의 규율
- III.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
  - 2. 형사책임에 관한 판결
  - 3. 검토
- IV. 미국 법제에 대한 검토
  - 1. 동물, 개 유형에 따른 분류(Type of Animal/Dog)
  - 2. 손해의 형태에 따른 분류(Type of Damage)
  - 3. 책임인정 범위에 따른 분류
  - 4. 책임의 예외적 사유
  - 5. 검토
-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견주의 지위
  - 2. 견주의 책임-민법 제759조와 견주의 책임 인정 여부
  - 3.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제1저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의교수

접수일자 : 2018 4. 29. / 심사일자 : 2018. 5. 24. / 게재확정일자 : 2018. 5. 29.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 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에 245건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sup>1)</sup>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sup>2)</sup> 개물림 사고의 범위는 개에게 직접적으로 사람이 물리는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개의 발톱에 긁히거나 찍히는 사고, 개의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이 놀라서 넘어지는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까지 포함하기도 한다.<sup>3)</sup>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개물림 사고를 통하여 심한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삶의 질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개에 대한 공포로 자동반사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견주 등 애완견을 옹호하는 자와의 사이에 의견이 달라지게 되고 이웃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결국 공동체 분열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개물림 사고의 대처 및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무형비용으로 동물 관련 문제에 자원 봉사자 및 공동체 관리를 위한 비용, 개물림 사고 후의 적절한 의료 지원의 구축을 위한 비용,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에 대한 지역 안전을 위한 비용, 유기견 관리를 위한 동물 보호소 지원 비용 등이 포함된다.<sup>4)</sup>

1) 2017. 6. 11.자 세계일보 기사, ‘반려견 물림 사고 급증 ... 주인이 더 문제다’

2) 인신사고가 아닌 개물림 사고로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의 셰퍼드 무리가 개장 지붕 틈으로 탈출하여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는 소형견들을 물어 뜯어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들 수 있다.; 2018. 2. 26.자 중앙일보 기사, ‘개장 지붕 틈으로 탈출...’ 셰퍼드 무리, 도심 활보에 주민대피 소동

3) 구체적인 양상에 대하여는 ‘IV. 미국 법제에 관한 검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 파악하는 바와 같이 개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신 사고까지 포섭하여 개물림 사고로 파악하기로 한다.

4)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Canine Aggression and Human-Canine Interactions, “A community approach to dog bite prevention”, *JAVMA*, Vol

우리나라에도 개물림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자 법제상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사고에 대한 견주(犬主)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제고되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제759조에서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형법에서는 동물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제268조의 ‘과실치사상죄’를, 그리고 특별법인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의2에서 ‘맹견의 관리’를, 제13조의3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등’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규정에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의 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II. 개물림 사고에 관한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의 검토

### 1. 일반법의 규율

#### (1) 민법의 규정

우리나라의 현행법 규정으로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제759조를 통하여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두고 있다. 즉, 민법 제759조는 제1항에서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에 의하여 동물에 해당하는 개<sup>5)</sup>에 의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개

218, No. 11, June 1, 2001, pp. 1733-1734.

5) 동조의 동물의 범위에 대하여 본고에서 논의하는 개의 경우 주인이 있는 경우는 물론 인간에 의하여 점유 내지 보관중이기만 하면 되므로 야생동물에 해당하는 개인 경우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찬,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재산법연구』

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sup>6)</sup>

동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동물을 기르는 자에게 보다 가중된 책임을 지우는 일종의 위험 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이해된다,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예측할 수 없는 충동적이고 난폭한 공격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동물의 점유자나 보관자에게 특별한 주의를 하게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물의 가해행위는 동물특유의 위험 내지 전형적 동물위험에 해당하는 것으로<sup>7)</sup> 이성에 의한 제어를 받지 않는 동물의 자의적이고, 본능적 행동에 의하여 동물 스스로에 의해서 실현되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한다.<sup>8)</sup> 다만 동조의 구조가 제1항의 단서에서 점유자 측에서 동물의 보관상의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적 책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sup>9)</sup> 이 때 ‘상당한 주의’는 통상 하여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로, 이상한 상황에 대한 대비까지 하여야 할 정도의 주의의무는 아닌 것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동물의 종류와 성질, 주위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고 있다.<sup>10)</sup> 예를 들어 인파가 많이 모이는 혼잡한 곳에서 소형 애완동물을 안거나 보호 케이지에 넣는 등의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는 것은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해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인다.<sup>11)</sup>

제28권 제4호, 2012. 2, 144쪽.

- 6) 김상훈, “현행 민사법 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2015, 313쪽.
- 7) 이는 동물보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무과실책임에 의해 보호되는 객관적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 이연갑, “민법 제759조의 개정 논의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2013. 6, 239쪽.
- 8) 윤석찬, 앞의 논문, 145-146쪽; 양창수,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12, 80쪽.
- 9) 과실책임보다는 가해자에게 불리하지만 무과실책임만큼 가해자에게 엄격하지는 않다는 의미이다.; 이연갑, 앞의 논문, 240쪽; 김승표 집필 부분, 집필대표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각칙(제4판), 2016. 6, 577-578쪽; 양창수, 앞의 논문, 79쪽.
- 10) 위 주석민법, 583쪽.

## (2) 형법의 규정

개물림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은 형법 제266조 및 제267조의 과실치사상죄이다. 형법 제266조 제1항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율하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사람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물림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건강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 규정은 과실범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건강을 보호 대상으로 하지만 고의범인 살인죄와는 다르다. 형법상 과실범은 결과범이므로, 과실치사상죄에서는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해야 하며, 과실행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행위가 있었으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이 없거나 과실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과실범이 성립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인과관계는 합법칙적 조건관계로 인정되며, 상해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과실행위가 결과발생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으므로 제3자의 행위가 개입하였거나, 피해자의 기여과실에도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과실행위가 결과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sup>12)</sup>

과실치사상죄에서의 과실행위는 형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며,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결과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말한다<sup>13)</sup>. 따라서 개물림 사고에서의 견주는 예컨대 개가 낫선 사람을 보면 사나워질 수 있는 점 등을 예상하고

11) 배기석·배소민,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일 판례 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453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2012. 5, 122-123쪽.

12)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7, 92-95쪽.

13) 임웅, 같은 책, 93쪽.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개를 안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사망케 하는 결과를 회피해야 형사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다.

## 2. 특별법의 규율

### (1) 동물보호법

개물림 사고와 같은 소유자등이 관리하고 있는 개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관한 규율은 위의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2018. 3. 20. 일부 개정을 통하여 ‘맹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신설하였다.

종래 개물림 사고에 연계되는 동물보호법상의 규율은 제13조 제2항에서는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안전조치’로써 제1항에서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다(동법 제47조 제3항 제4호).

2018. 2. 28.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었고, 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공포되어 2018. 9. 21.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sup>14)</sup> 신설된 맹견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맹견의 관리에 관한 제13조의2에서는 맹

14) 2018. 2. 28.자 제356회 국회본회의회의록, 13-14쪽.

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이동장치를 할 것,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의 준수 의무와 함께(동조 제1항),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동조 제3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조 제2항). 또한 맹견의 소유자등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여 장소적 제한을 가하였다(동법 제13조의3). 그리고 동물 혹은 맹견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의무를 해태하여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동법 제46조 제1항), 타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동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의4호) 형사책임을 강화하였다.

## (2) 경범죄 처벌법

개물림 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규정으로 형법 외에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상 처벌이 되는 행위들에는 형법상 위법행위와 중첩되는 것들이 다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업무방해’를 들 수가 있다. 형법상으로도 업무방해죄 규정이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에서도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상 위법행위는 형법상 위법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

한 행위이며, 이는 개물림 행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개물림 행위와 관련하여 경범죄 처벌법 상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홀과 동물 등에 의한 행패에 관한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 규정은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법 동조 동항 제26호 규정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에 따르면,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 III.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

#### 1. 민사책임에 관한 판결

##### (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도사견 소유자가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의 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위 도사견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피고로서는 위 도사견이 난폭한 성질을 지녀 사람을 물 위험성이 크므로 그 사람이 위 도사견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를 확인하여 위 도사견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태만히 하여 위 도사견을 보관할 별도의 개집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위 ○○○에게 빌려주어 그로 하여금 오래전부터 사용하여 온 낡은 개끈 만으로서 사람이 드나드는 그의 집마당에 그냥 매어 두게 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진 사고를 일으키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민법 제750조를 적용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위 사건은 맨션에 거주하면서 애완용 개를 기르는 피고가 목줄을 묶지 않은 상태에서 애완견을 복도에 내려놓자 이 사건 애완견이 같은 옆집에 거주하는 원고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오는 바람에 이에 놀라 이 사건 애완견이 달려오는 반대쪽으로 도망가다가 뒤돌아 보는 순간 이 사건 애완견이 뒤로 쫓아온 것을 보고 원고가 엉덩이 부분으로 복도에 넘어져 우측 대퇴경부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우측 대퇴 경부 골절로 인한 비관혈적 정복 및 나사못 내고정술과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하게 된 사안이다.

동 사건에서 법원은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으로 하여금 타인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애완견이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하면서 피고는 이 사건 애완견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애완견으로 인하여 놀라 넘어지게 함으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9조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적용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2612 판결

개물림 사고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52612 판결<sup>15)</sup>이 있다.

동 판결의 사안은 다음과 같다. 피고 B는 말티즈 품종의 개 1마리(이하 ‘이 사건 개’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반려견 행동 교정전문가인데,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개의 행동 교정을 위탁하였다. 피고들은 2016. 11. 17.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개의 행동 교

15)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소492209 판결이다.

정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같은 날 위 식당에서 식사 후 14:00경 위 식당을 나오던 중 이 사건 개에게 원고의 왼쪽 다리 부분을 물려 상처를 입어 치료비 등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개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개가 원고를 물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2. 형사책임에 관한 판결

### (1) 의정부지방법원 2017.8.24.선고 2017고정474 판결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마트 배달원 A가 피고인의 자택으로 배달을 가서 현관에 상품을 내려놓는 순간 애완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A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어서 전치5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법원은 애완견이 낯선 사람을 보면 물거나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개주인에게는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甲에게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 (2) 수원지방법원 2018. 2. 20.선고 2017노7362 판결

위 사건의 피고인은 주거지 마당에서 ‘핏볼테리어’ 개 2마리를 포함한 총 8마리의 개를 키우며 관리하는 자인데, 핏볼테리어는 투견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견종으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인 성향이 있는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핏볼테리어를 기르면서 철장에 넣어 두지 않고 주거지 마당에 묶어 두면서 녹이 쓸어 풀릴 수 있는 상태의 쇠사슬을 개의 목줄 및 쇠말뚝과 연결해 두어 쇠말뚝에 연결된 쇠사슬 고리가 풀리도록 관리한 중대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핏볼테리어 한 마리가 마당 앞 길을 지나던 피해자의 팔다리와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물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중족

골 골절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었다.

위 사건의 1심에서 법원은 “핏볼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으로서 개가 주인의 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가할 것에 대비하여, 개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철장안에서 기르거나, 개의 목줄이 절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으로 개가 위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68조의 중과실치상을 적용하여 1년 6월의 금고형을 선고하였다.<sup>16)</sup>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3. 검토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에 관한 위의 민·형사책임에 판결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민사 판결의 태도는 견주가 직접 점유자가 아닌 한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759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명문에 의할 때 민법 제759조의 적용범위가 직접 점유하는 자 내지 보관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견주가 소유권을 직접 점유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위험원인 소유권을 관리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형사 판결의 태도는 형법에서 개에 대한 소유자와 점유자를 분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소유권이라는 위험원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에 있어 견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다면, 비록 견주가 소유권의 공격적인 행위 당시 소유권을 직접 관리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16)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단2688 판결.

## IV. 미국 법제에 대한 검토

미국은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견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개물림 법’(Dog Bite Law)을 대다수의 주가 채택하고 있으며, 2017년을 기준으로 14개의 주 만이 이러한 법을 규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개물림 법에서는 견주에게 타인이나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유발한 경우 엄격한 민사책임을 부담 지우는데, 이러한 엄격 책임 법률은 개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 배상을 지우는 민사 책임을 부여한다. 미국의 개물림 법은 ‘위험한 개(dangerous dog)’에 초점을 두는 법이 아니라 개가 ‘위험한’ 혹은 ‘악의적인’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견주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국의 개물림 법은 주마다 어떠한 견종으로 인한 개물림 사고까지 포섭할 것인지, 즉 맹견만으로 국한할 것인지 혹은 맹견이 아닌 반려견 모두를 포함할 것인지가 다르다. 또한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도 다르게 설정하는바, 일부 주에서는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설정하기도 하는 한편 일부 주는 인신사고 외에 재물에 대한 손해 또한 책임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각 주별 규정을 공통된 내용별로 나누어 분류하고 비교 정리하여 검토해 보도록 한다.<sup>17)</sup>

### 1. 동물, 개 유형에 따른 분류(Type of Animal/Dog)

#### (1) 대형견(Dog at large)

동물의 범위를 대형견(Dog at large)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가 있다. 대형

---

17) 해당 내용은 Rebecca F. Wisch and Diamond Conley, Table of Dog Bite Strict Liability Statute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17, <https://www.animallaw.info/topic/table-dog-bite-strict-liability-statutes> (2018.4.22.최종방문)을 재정리한 것이다. 기준별 분류에 따라 주별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되므로 이하에서 주의 해당 조문은 각 주가 맨 처음 언급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였다.

견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리조나<sup>18)</sup>, 워싱턴D.C<sup>19)</sup>., 조지아<sup>20)</sup>, 노스캐롤라이나<sup>21)</sup>, 테네시<sup>22)</sup>, 웨스트버지니아<sup>23)</sup> 이렇게 6개주이다. 이들 주는 대형견에 대한 엄격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되나 배상해야 할 피해 유형이나 예외는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형견의 범위와 관련하여 ‘달리느(돌아다니는)’<sup>24)</sup> 상태를 추가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워싱턴D.C.,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이다. 한편, 단순히 대형견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주들이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그러하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 대형견이라는 견종 분류 외에 “밤’에 ‘주인이나 다른 사람 동반 없이’ 돌아다니는 ‘6개월 이상’<sup>25)</sup>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테네시 주의 경우에는 “견주의 합당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은’ 대형견‘만’<sup>26)</sup>이라는 조건이,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경우에는 “달리며 돌아다니는’ 대형견 ‘만’<sup>27)</sup>이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그 범위를 더욱 한정하고 있다.

## (2) 동물(Animal)

많지는 않지만 일부 주들이 동물 범위를 개로 한정하지 않고 동물 자체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와이 주의 경우에는 ‘모든’ 동물<sup>28)</sup>이라 하여 가장 확장된 범위로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알라바마 주의 경우에는 동물 범위를 ‘공격적인 또는 위협한’ 동물<sup>29)</sup>이라 하여 하와이

18) A. R. S. § 11-1020 ; A. R. S. § 11-1025.

19) DC ST 8-1812.

20) Ga. Code Ann., § 51-2-7.

21) N.C.G.S.A. § 6.7-12

22) T. C. A. §44-8-413.

23) W. Va. Code, § 19-20-13.

24) “A dog running at large”.

25) “Dogs over 6 months old running at large in the night when not accompanied by owners/other person”.

26) “**ONLY** dogs running at large/not under reasonable control of the owner”.

27) “**ONLY** dogs running at large”.

28) “Any animal”.

주에 비해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더해 모든 개<sup>30)</sup>도 그 대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의 경우 ‘개 또는 모든 동물’<sup>31)</sup>로 규정하여 개도 그 범위에 함께 포함시키고 있어 알라바마 주에 비해서는 동물 범위가 넓지만 개의 범위<sup>32)</sup> 부분에 있어 해석여지가 있다.

### (3) 개(Dog)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규이므로, 앞에 언급된 대형견과 동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주들을 제외한 주들이 동물범위를 특별한 제한 없이 개(dog)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 주 중에서도 ‘모든’ 개(any dog)라고 하여 범위의 해석 여지가 있는 주도 있다.<sup>33)</sup> 그리고 루이지애나 주<sup>34)</sup>의 경우에는 ‘엄격책임이 완화된’ 개(다른 동물들은 과실을 기준)<sup>35)</sup>라고 하여 그 책임 범위를 더욱 한정하고 있다. 한편, 애리조나 주의 경우에는 대형견과 그 외 견을 구분하여 규정<sup>36)</sup>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주와 다른 특이점이다.

---

29) “Vicious or dangerous animal”.

30) “Any dog”.

31) “Dog or any animal”.

32) ‘any’ dog와 dog.

33) 캘리포니아 주(West’s Ann. Cal. Civ. Code § 3342), 코네티컷 주(C. G. S. A. § 22-357), 플로리다 주(West’s F. S. A. § 767.04), 인디애나 주(IC 15-20-1-3), 아이오와 주(I. C. A. § 351.28), 켄터키 주(KRS § 258.235(4)), 매사추세츠 주(M.G.L.A. 140 § 155), 미주리 주(V.A.M.S 273.036), 몬태나 주(MCA 27-1-715), 뉴햄프셔 주(N.H. Rev. Stat. § 466:19), 뉴저지 주(N. J. S. A. 4:19-16), 오클라호마 주(4Okl.St. Ann. § 42.1), 펜실베이니아 주(3 P.S. § 459-502), 로드아일랜드 주(Gen. Laws, 1956, § 4-13-16), 워싱턴 주(West’s RCWA 16.08.040), 위스콘신 주(W. S. A. 174.02).

34) LA C.C. Art. 2321.

35) “Dog for modified strict liability (other animals are negligence-based)”.

36) “Dog at large”, “Any dog”.

## 2. 손해의 형태에 따른 분류(Type of Damage)

### (1) 무는 행위(Bite)

무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주로는 알라바마 주<sup>37)</sup>, 아리조나 주, 캘리포니아 주, 콜로라도 주<sup>38)</sup>, 플로리다 주, 인디애나 주, 미시건 주<sup>39)</sup>, 미주리 주, 몬태나 주, 뉴저지 주, 오클라호마 주, 펜실베이니아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sup>40)</sup>, 워싱턴 주가 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단순히 무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는 주는 플로리다 주, 인디애나 주, 미시건 주, 워싱턴 주에 불과하다. 몬태나 주, 미주리 주, 뉴저지 주, 워싱턴 주의 경우 ‘사람을 무는 행위(Bite to person)’라고 하여 그 손해의 피해대상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주의 경우에는 ‘개물림(Dog bite)’이라고 규정하여 무는 행위를 하는 대상 범위를 개로 한정하고 있다.<sup>41)</sup> 다만, 미주리 주의 경우에는 사람을 무는 행위 외에 재산상 손해 등 다른 요소들<sup>42)</sup>도 복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는 무는 행위‘만’<sup>43)</sup>이라고 하여 해석범위와 대상을 매우 한정하고 있으며, 콜로라도 주는 무는 행위(bite)에 ‘개물림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으로 고통받거나 사망한 경우에만’<sup>44)</sup>이라는 단서를 붙여 역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2) 상해(Injury)

알라바마 주의 경우 손해의 형태를 무는 행위 또는 상해<sup>45)</sup>라고 하여

---

37) Ala. Code 1975 § 3-6-1.

38) C. R. S. A. § 13-21-124.

39) MCL 287.351.

40) Code 1976 § 47-3-110.

41) 이것은 애리조나 주가 대형견에 대한 규정과 그 외 다른 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규정 상 여기에서의 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대형견이 아닌 그 밖의 다른 견들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42) “Damage to property or livestock, Any person who is held liable under the provisions of subsection 1 shall pay a fine not exceeding \$1000”

43) “Bite only”.

44) “Bite BUT ONLY if the person suffered serious bodily injury or death from being bitten by a dog”.

무는 행위 뿐 아니라 상해행위도 손해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 대한 무는 행위 또는 상해<sup>46)</sup>라고 하여 무는 행위 뿐 아니라 상해행위도 손해의 형태로 규정하되, 그 대상을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하여 피해범위를 알라바마 주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오리건 주<sup>47)</sup>는 개가 야기한 상해<sup>48)</sup>라고 하여 상해가 ‘개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메인 주<sup>49)</sup>의 경우 사람에 대한 상해행위<sup>50)</sup>라고 하여 그 피해 대상이 ‘사람에 국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조지아 주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상해<sup>51)</sup>라고 하여 피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타인’에 국한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대비하여 유타 주<sup>52)</sup>는 모든 상해<sup>53)</sup>라고 하여 상해와 관련한 손해의 형태 중 가해나 피해 대상에 대한 범위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일리노이 주<sup>54)</sup>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상해 외에 공격 등도 손해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대상 범위에 행위유형을 추가하고 있다.<sup>55)</sup>

반면, 델라웨어 주<sup>56)</sup>는 모든 상해 외에 사망이나 재산상 손실 등도 그 손해 범위로 규정<sup>57)</sup>하여 상해를 손해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주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무는 개의 유형을 대형견과 그 밖의 견으로 구별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는 대형견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나 재산 상 손실을 끼친 경우 모두를 그 손해의 형태로 규정<sup>58)</sup>하고 있어 상해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대

---

45) “Bite or injury“.

46) “Bites or injures any person”.

47) O. R. S. § 31.360.

48) “Injury caused by a dog”.

49) 7 M. R. S. A. § 3961.

50) “Injures a person”.

51) “Injury to another person”.

52) U.C.A. 1953 § 18-1-1.

53) “Any injury”.

54) 510 ILCS 5/16.

55) “Attacks, attempts to attack, or injures any person”.

56) 16 Del.C. § 3053F.

57) “Any injury, death or loss to person or property”.

58) “Any injury to person or damage to property”.

물피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상해’자체만이 아니라 상해로 인한 ‘손해(damage)’를 손해의 형태로 규정하여 피해 범위를 ‘상해’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테네시 주가 그러한데, 상해로 고통 받게 되는 사람의 모든 손해를 규정<sup>59)</sup>하고 있다.

### (3) 대물손해(Property damage)

재산상 손해라 할 수 있는 대물손해(Property damage)와 관련하여서는, 그 요소를 단일의 피해유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른 유형의 손해형태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sup>60)</sup> 대표적인 곳이 대형견과 그 밖의 견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인데 대형견에 의한 대물손해를 상해와 더불어 손해형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sup>61)</sup> 그리고, 코네티컷 주 규정에 따르면, 대물손해 외에 대인손해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재산(property)에는 반려동물도 포함되며, 손해액 산정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비나 매장비용이 고려된다.<sup>62)</sup> 하와이 주<sup>63)</sup>는 사람에 대한 개인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범위로 규정<sup>64)</sup>하여 코네티컷 주와 유사하게 대인/대물 손해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에 포함되는 범위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다. 매사추세츠 주는 하와이 주와 내용 상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지만,<sup>65)</sup> 대인 부분에 대한 손해의 경우 신체(body)로

---

59) “Any damages suffered by a person who is injured by the dog”.

60) 이와 관련하여 무는 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미주리 주가 손해의 형태로 무는 행위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물손해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해당 규정 원문은 각주33 및 각주42 참조.

61) “Any injury to person or damage to property”.

62) “Any damage to either the body or property of any person. Note that here, “propert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a companion animal, as defined in section 22 - 351a, and “the amount of such damage”, with respect to a companion animal, includes expenses of veterinary care, the fair monetary value of the companion animal and burial expenses for the companion animal.”.

63) H R S § 663-9, § 663-9.1.

64) “Personal or property damage to any person”.

65) 매사추세츠 주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하와이 주 규정 내용은 각주63 및 각주64 참조. “Damage to either the body or property of any person”.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한편, 뉴햄프셔 주는 코네티컷 주와 유사하게 대인손해 또는 대물손해를 함께 규정하면서 여기에서의 재산에 동물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포함되는 동물을 양, 가금류 등으로 예시적으로 열거<sup>66)</sup>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네티컷 주와 차이가 있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동산/부동산을 잃게 되거나 상해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sup>67)</sup>하여 재산에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시키고, 대인책임과 대물책임을 모두 부과하고 있다.

#### (4) 기타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워싱턴D.C.가 있는데, 이곳은 다른 주들과 달리 다음 파트에서 살펴 볼 책임범위나 예외사유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형견에 의한 사람 상해 사건에 대해 개가 사나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부족이 과실판단에서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sup>68)</sup> 루이지애나 주도 ‘견주가 예방할 수 있었고’ 개가 야기한 대인/대물 손해에 대해 엄격책임을 진다<sup>69)</sup>고 하여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된 엄격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는 메릴랜드 주<sup>70)</sup>이다. 메릴랜드 주 규정에 따르면 상해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시, 견주가 본인 소유의 개가 포악하거나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추정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하다.<sup>71)</sup>

---

66) “Damage to person or property, including sheep, lambs, fowl, or other domestic creatures”.  
67) “Liable in damages to any person injured or suffering loss to his property or chattels”.  
68) “If a dog injures a person while at large, lack of knowledge of the dog's vicious propensity standing alone shall not absolve the owner from a finding of negligence.”.  
69) “The owner of a dog is strictly liable for damages for injuries to persons or property caused by the dog and which the owner could have prevented”.  
70) MD Code, Courts and Judicial Proceedings, § 3-1901.  
71) “In an action against an owner of a dog for damages for personal injury or death caused by the dog, evidence that the dog caused the personal injury or death creates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owner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the dog had vicious or dangerous propensities”.

견주가 손해에 대해 전부 책임질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미네소타 주와<sup>72)</sup> 네브래스카 주<sup>73)</sup>가 그러한데, 미네소타 주 규정에 따르면 견주는 공격을 당하거나 상해 입은 자의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공격당하거나 상해 입은 자의 행위가 ‘평온’했어야 하며, <sup>74)</sup> 네브래스카 주 규정에 따르면, 침입자가 아닌 사람이 개 또는 개에 물린 것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모든 손해에 대해 견주가 책임을 부담한다.<sup>75)</sup> 이 두개 주의 규정은 각각 피해자가 개를 도발하지 않았을 것과 손해가 발생한 시점 있었던 장소에 합법적으로 있었을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책임의 예외사유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sup>76)</sup> 오하이오 주<sup>77)</sup>도 견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모든 상해, 사망 또는 개가 야기한 대인 또는 대물 손실에 대해 인정하는 하는데, 피해자가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견주의 사유지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sup>78)</sup>

### 3. 책임인정 범위에 따른 분류 - 피해자가 현재한 장소의 소유관련 및 피해자의 행동 문제

피해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책임인정 범위가 달라지기도 한다.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개물림이었는지 견주 소유의 재산영역 내에서 발생한 개물림이었는지 등에 따라 견주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

72) MSA 347.22.

73) Neb. Rev. St § 54-601.

74) “Attacks or injures any person who is acting peaceably. Owner of the dog is liable in damages to the person so attacked or injured to the full amount of the injury sustained”.

75) “Any and all damages to: any person, other than a trespasser, by reason of having been bitten by any such dog or dogs”.

76) 미네소타 주는 예외 사유로 도발(Provocation)을, 네브래스카 주는 무단침입(Trespasser)을 규정하고 있다.

77) RC § 955.28.

78) “Liable in damages for any injury, death, or loss to person or property that is caused by the dog. Also includes individual who, at the time of the injury, was on the property of the owner solely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door-to-door sales or other solicit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dividual was in compliance with any requirement to obtain a permit or license”.

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에서는 공공장소에 있을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있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부 주에서는 건주의 사유지에서 발생한 개 물림은 견주에게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개의 유형(대형견, 공격적인 등)에 따른 장소적 분류

알라바마 주는 공격적인 개의 경우 견주 또는 관리자가 개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등 부주의하게 관리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그 밖의 개에 의한 물림에 대해서는 그 피해자가 법적 권리가 있는 장소에 있을 경우나 견주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법에 의한 의무 수행 시나 우유배달,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건물공공시설을 수리하는 경우가 장소적으로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sup>79)</sup>

애리조나 주는 대형견에 의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상해나 재산상 손해에 대해 그 손해가 자초된 것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견주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손해가 자초된 것일 때에는 자초한 자 또는 자초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개에 의한 물림의 경우에는 공공장소나 견주의 재산을 포함한 합법적 사유지를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sup>80)</sup>

대형견이 견주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테네시 주는 공공장소에 있었거나 다른 개인의 사유공간에 합법적으로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장소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견주 또는 관리인의 과실문제가 적용된다.<sup>81)</sup>

79) “Vicious dog : Under 3-1-3, liability if owner/keeper allows dog to go at liberty (roam) or carelessly manages the animal. Dog bite : Under 3-6-1, a place where victim has a legal right to be or on owner's property only when defined in 3-6-2.”.

80) “Dogs at large : Injury to any person or damage to any property by a dog while at large shall be the full responsibility of the dog owner or person or persons responsible for the dog when such damages were inflicted.(11-1020) Dog bite : O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or o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11-1025)“.

81) “While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or on the private property of another (negligence applies if on the dog owner/keeper's property)”.

(2) 피해자가 사유지에 현재할 당시의 합법성(lawfully) 여부

견주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주는 장소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개물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유지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개물림 당시 합법적으로 있었던 경우에 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주에 따라 합법적으로 현재한 사유지에 견주의 재산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캘리포니아 주<sup>82)</sup>, 플로리다 주<sup>83)</sup>, 미시건 주<sup>84)</sup>, 몬태나 주<sup>85)</sup>, 뉴저지 주<sup>86)</sup>, 사우스캐롤라이나 주<sup>87)</sup>, 워싱턴 주<sup>88)</sup>가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이며, 이중에서도 플로리다 주는 다른 주들과 달리 합법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이다.<sup>89)</sup> 그리고 콜로라도 주는 후자(後者)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곳으로, 공공 또는 사유지에 합법적으로 있는 동안<sup>90)</sup>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미네소타 주는 공공장소, 사유지 구분 없이 피해자가 아마도 합법적으로 있었던 모든 장소<sup>91)</sup>라고 하여 합법적으로 현재하고 있었다면

---

82)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83) “Includes when a person is : •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 i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84) “While the person is on public property, or lawfully on private property,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the owner of the dog”.

85) “A public place or lawfully on or i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located within an incorporated city or town”.

86) “While such person is on or in a public place, or lawfully on or i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the dog”.

87) “In a public place or is lawfully i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dog owner or person having the dog in the person's care or keeping”.

88) “While in or on a public place or lawfully in or on a private place including the property of the owner of such dog”.

89) “A person is lawfully upon private property of such owner within the meaning of this act when the person is on such property in the performance of any duty imposed upon him or her by the laws of this state or by the laws or post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or when the person is on such property upon invitation, expressed or implied, of the owner”.

90) “While lawfully on public or private property”.

장소의 소유주를 불문하고 있으며, 네브래스카 주와 오클라호마 주는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현재하는 장소였다면 견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만 규정을 살펴보면, 네브래스카 주는 있을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아마도 모든 장소<sup>92)</sup>라고 하고 오클라호마 주는 있을 합법적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는 동안<sup>93)</sup>이라고 하여 해석상 네브래스카 주가 오클라호마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장소 범위가 좁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규정 내용들이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소에 현재할 당시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견주 책임의 예외가 된다. 예컨대 ‘침입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무단침입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현재한 장소에서 개물림이 있었을 경우에는 견주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 (3) 피해자의 행동 유형 관련

피해장소의 범위와 무관하게 피해 당시 현재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들이 있다. 장소적 요건에 물림 피해 등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들 요소들은 주로 책임제한이나 예외 사유의 요소와 연결된다.

일리노이 주는 합법적으로 있었을 모든 장소에서 스스로 한 행동이 평온하였을 것을 요구한다.<sup>94)</sup> 인디애나 주는 피해자가 평온하게 행동했을 요건에 더해 피해 당시 현재했던 장소에 법적으로 부과된 직무를 떠나기 위한 것이었을 요건도 함께 충족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sup>95)</sup>

91) “Any place where the person may lawfully be”.

92) “Presumably any place where person has legal right to be”.

93) “While such person is in or on a place where he has a lawful right to be.”.

94) “Peaceably conducting himself or herself in any place where he or she may lawfully be”.

95) “A person:(1) who is acting peaceably; and (2) who is in a location where the person may be required to be in order to discharge a duty imposed upon the person by: • the laws of Indiana; •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 the post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 (4) 모든 장소(Any place)

많은 주들이 모든 장소에서 사고 발생 시 견주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네티컷 주, 델라웨어 주, 아이오와 주, 켄터키 주, 루이지애나 주, 메릴랜드 주, 매사추세츠 주, 뉴햄프셔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오하이오 주, 오리건 주, 펜실베이니아 주, 유타 주, 위스콘신 주의 14개 주가 모든 장소를 추정(Presumably any place)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14개 주와 마찬가지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견주의 재산 범위는 그 대상 장소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14개 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96)</sup> 그리고 하와이 주의 경우에는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포함한 15개 주와 달리 추정하지 않고 모든 장소(Any place)를 명시하고 있다.

#### (5) 기타

대형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조지아 주는 장소적인 예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부주의하게 동물을 자유롭게 놔두어 개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주법에 따른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sup>97)</sup>라고 하여 피해가 발생한 장소의 상황적인 부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4. 책임의 예외적 사유

#### (1) 경찰/군견 관련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애리조나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경찰견과 군견과 관련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애리조나 주는 군 또는 경찰 업무에 사용되는 개로 용의자 체포, 범죄수사, 영장 집행,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기 위하거나 정부기관을 돕는 역할을 하거나 스스로 방어할 때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sup>98)</sup>. 캘리포니아 주는 아리조나 주와 비교하여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96) "Presumably any place but owner's property".

97) "Carelessly allows the animal to go at liberty (or violates an ordinance or law requiring restraint - to "be at heel" according under this law)".

이 무엇인지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99)</sup>. 무는 행위가 개를 괴롭히거나 자극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방어하는 중에 발생하게 된다면 책임의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콜로라도 주도 견주의 책임예외 사유의 하나로 경찰관이나 군인의 의무수행에 사용되는 개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sup>100)</sup>

## (2) 도발(Provocation)요건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

경찰견/군견에 대한 책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애리조나 주는 도발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상당한 자가 개의 공격을 도발한 경우는 견주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할 사유가 되며, 도발문제는 합리적인 사람이 개를 도발할 개연성 있는 행동 또는 상황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sup>101)</sup>

---

98) “Dog used in military or police work when dog defending itself or assisting the agency : • apprehending a suspect • investigation of a crime • execution of a warrant • defense of a peace officer or another person”.

99) “Police/military dogs if the bite occurred while the dog was defending itself from an annoying, harassing, or provoking act, or assisting an employee of the agency in any of the following: • in the apprehension or holding of a suspect where the employee has a reasonable suspicion of the suspect's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 in the investigation of a crime or possible crime • in the execution of a warrant • in the defense of a peace officer or another person”.

100) “A dog owner shall not be liable: • the dog is being used by a peace officer or military personnel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다만 콜로라도 주는 이러한 사유 외에도 ‘• 불법적으로 공공장소 또는 사유지에 현재했을 것 • 물린 사람이 개 주인이 명확히 눈에 띄도록 표시한 ‘침입금지’, ‘개조심’의 표시가 되어 있는 사유지에 있었을 것 • 고의로 개를 도발했을 것 • 수의사, 개조련사 등과 함께 업무수행중인 개 • 사냥개 등 포식성이 있지만 통제된 개 등’의 5개의 예외사유를 더 규정하고 있다(• if the person bitten is unlawfully on public or private property • if the person bitten is on property of the dog owner and the property is clearly and conspicuously marked with one or more posted signs stating "no trespassing" or "beware of dog" • the person knowingly provoked the dog • the person is a veterinary health care worker, dog groomer, humane agency staff person, professional dog handler, trainer, or dog show judge acting in the performance duties • the dog is working as a hunting dog, herding dog, farm or ranch dog, or predator control dog on the property of or under the control of the dog's owner). 이와 관련한 각각의 해당부분에 대한 다른 예외사유는 이하에서 따로 언급을 생략하도록 한다.

하와이 주는 도발에 대한 규정과 함께 무단침입을 책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sup>102)</sup> 구체적으로는 동물에 대한 괴롭힘이나 학대의 직접적 결과로 인한 동물의 반응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동물소유주나 동물소지자가 이러한 동물 반응이 원인이 되는 괴롭힘 등의 행위에 과실이 없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면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않는다고 하고 있다.<sup>103)</sup>

일리노이 주는 함축적으로 합법적 장소에 있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도발<sup>104)</sup>이라고 하여 도발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반면 인디애나 주와 루이지애나 주, 미시건 주, 미네소타 주, 몬테나 주, 오클라호마 주는 특별한 부가 조건이나 명시된 내용 없이 단순히 ‘도발’이라고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미주리 주는 도발을 규정하면서 그 책임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피해당사자가 사건에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무는 행위를 한 개의 주인이 지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액에서 사고에 기여한 손해 당사자가 사고에 기여한 비율만큼 경감된다고 한 것이다.<sup>105)</sup>

---

101) “Proof of provocation of the attack by the person injured shall be a defense to the action for damages. The issue of provocation shall be determined by whether a reasonable person would expect that the conduct or circumstances would be likely to provoke a dog.”.

102) 무단침입에 대한 예외 규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부분인 (3) 무단침입이나 범법행위 등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에서 상술한다.

103) “Any owner or harbinger of an animal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ctions of the animal where the trier of fact finds that: The animal caused such damage as a proximate result of being teased, tormented, or otherwise abused without the negligence, direction, or involvement of the owner or harbinger“ 그 밖에도 책임지지 않는 예외와 관련하여 법에 근거한 일반적 정당화원칙에 따라 정당화된 동물의 사용도 규정하고 있다(The use of the animal to cause damage to person or property was justified under chapter 703 (related to general principles of justification under the law).

104) “Provocation (and, by implication, trespass since only applies when person is lawfully in a place)”.

105) “Also, if it is determined that the damaged party had fault in the incident, any damages owed by the owner or possessor of the biting dog shall be reduced by the same percentage that the damaged party's fault contributed to the incident.”.

(3) 무단침입(Trespass)이나 범법행위(Criminal Offense)  
등을 예외로 규정한 경우

코네티컷 주는 피해자가 무단침입 또는 기타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학대하는 경우를 손해배상대상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7세 이하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추정되고, 그 입증책임은 견주 또는 개를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sup>106)</sup>

하와이 주는 도발에 대한 규정과 함께 무단침입을 책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으며, 무단침입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불법적으로 사유지에 들어갔거나 남은 것이 고의인 것으로 밝혀진 동물행위와 직접 연관된 인적, 물적 손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에 대해 동물소유주 또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자는 그 영역 내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떤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sup>107)</sup>

델라웨어 주는 상해, 사망 또는 손실 시 무단침입 또는 소유자 재산에 대한 다른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는 시도가 있었을 것, 임의의 사람에 대한 형사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기 위한 시도가 있었을 경우를 예외사유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개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학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sup>108)</sup>

네브래스카 주는 정부기관 또는 규정에 상세히 언급되어있는 바에 따

---

106) “Exceptions if person damaged by dog was: • committing a trespass or other tort • teasing, tormenting or abusing such dog.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 minor victim under 7 years old was not committing a trespass or other tort, or teasing, tormenting or abusing such dog. The burden of proof is on the defendant dog owner/caretaker to show that.”.

107) “Trespass: Any owner or harbinger of an animal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ivil damages resulting from actions of the animal occurring in or upon the premises of the owner or harbinger where the person suffering either personal or property damage as a proximate result of the actions of the animal is found by the trier of fact intentionally or knowingly to have entered or remained in or upon such premises unlawfully.”.

108) “at the time of injury, death, or loss: • was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 trespass or other criminal offense on the property of the owner • was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 criminal offense against any person • was teasing, tormenting, or abusing the dog”.

라 군 또는 경찰 업무로 개를 이용하는 자는 무단침입의 예외가 됨을 명시<sup>109)</sup>하고 있으며, 뉴햄프셔 주는 무단침입 또는 다른 불법행위를 범하는 것에 관여된 사람에 대해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sup>110)</sup>

#### (4) 견주가 주의 관련 표시 등을 한 경우

플로리다 주는 견주가 ‘Bad Dog’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표시를 눈에 띄는 곳에 해 두었을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6세미만인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sup>111)</sup> 그러는 한편 물림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피해자의 모든 과실에 대해 그 비율만큼 견주의 책임을 경감시키고 있다.<sup>112)</sup>

#### (5) 예외규정이 없는 경우(Not provided in law)

펜실베이니아 주, 로드아일랜드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는 예외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은 견주의 책임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들의 대부분은 발생 장소를 모든 장소로, 그리고 대물적 손해와 대인적 손해 모두를 대상으로 견주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한편 뉴저지 주도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무단침입과 같이 합법적으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무단침입을 예외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하는 것은 없지만 시사하는 것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13)</sup>

---

109) “Trespasser

Also, governmental agency or its employees using a dog in military or police work under the details listed in the statute.”.

110) “A person who was engaged in the commission of a trespass or other tort”.

111) “The owner is not liable (except when victim is under the age of 6) if at the time of any such injury the owner had displayed in a prominent place on his or her premises a sign easily readable including the words ‘Bad Dog.’”.

112) “Any negligence on the part of the person bitten that is a proximate cause of the biting incident reduces the liability of the owner of the dog by the percentage that the bitten person's negligence contributed to the biting incident.”.

(6) 기타

아이오와 주는 손해 당사자가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외에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광견병과 관련한 책임범위의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에 따르면 광견병에 감염된 개의 경우 견주가 그 감염사실을 알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 책임의 예외가 된다.<sup>114)</sup>

메릴랜드 주는 대형견에만 한정하여 항변이 허용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인데, 무단침입 또는 견주의 재산에 대한 다른 형사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시도, 모든 사람에게 대한 형사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가 그것이며 이 외에도 개를 학대하거나 괴롭혀서 유발하는 경우도 예외로 하고 있다.<sup>115)</sup>

오하이오 주는 피해 당시 피해자가 시도하거나 행하고 있었던 행위 내용에 따라 책임의 예외로 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적 침해행위를 하는 것, 견주나 관리자의 재산에 대한 경범죄 외의 다른 형사범죄, 모든 사람에게 대한 경범죄 외의 형사범죄, 견주와 관리자 또는 동물을 데리고 있는 자의 재산권역 내에서 개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그것이다.<sup>116)</sup>

오리건 주는 개물림과 관련한 조항이 개가 도발되었다는 것과 같이 견주가 할 수 있는 항변주장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sup>117)</sup>하여,

---

113) “Not provided, but trespass is implied by the law (i.e., not lawfully in a place)”.

114) “Liable except when the party damaged is doing an unlawful act. Also has exception for dogs affected with hydrophobia unless owner had reasonable grounds to know of the infection“.

115) “Defenses apply only if the dog is running at large: 1.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 trespass or other criminal offense on the property of the owner; 2.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a criminal offense against any person; or 3.Teasing, tormenting, abusing, or provoking the dog.“.

116) “Individual who, at the time, was committing or attempting to commit:  
• criminal trespass; • another criminal offense other than a minor misdemeanor on the property of the owner, keeper, or harbinger, • a criminal offense other than a minor misdemeanor against any person; • or was teasing, tormenting, or abusing the dog on the owner's, keeper's, or harbinger's property.“

117) “This section does not prevent the owner of a dog that caused an injury from asserting that the dog was provoked, or from asserting any other defense that may be available

견주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항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책임 범위의 확대를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검토

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미국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개물림 사고에 관하여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을 동시에 규율함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개물림 사고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과 견주 등에 대한 처벌에 관하여 단일법 체계 내에서 모두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법과 일반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적용 단계를 살펴보면 특별법으로 개물림 사고로 견주 등에게 법정 주의의무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관련된 동물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통하여 행정상 처분 혹은 벌칙 규정이 적용된 뒤, 특별법에서 해결되지 않는 기타의 주의의무 위반의 존부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됨과 동시에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통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sup>118)</sup>

둘째, 대상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금번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맹견’을 위주로 한 개물림 사고를 비롯한 개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장소적 위험성까지 확장하여 규율하였고, ‘견주’를 포함한 점유자, 관리자 등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법제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불법적으로 있었는지 여부 및 사고를 도발한 것인지 등을 통한 면책사유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결국 이와 같은 부분은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민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로 판단될 소지가 크며, 형사사건의 경우 위법성 조각사유 내지 양형의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

to the owner.”.

118) 형사상 처벌의 경우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보다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적어지게 되었다.

## V. 현행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견주의 지위

견주는 소유견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책임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견주는 소유견에 대하여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인데,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소유견에게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영양분을 공급하며, 잘 훈련하고, 그 건강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견주는 자신에게 부합하는 애완견의 선택, 양질의 영양과 주거, 건강 관리 및 이를 위한 의료의 제공, 필요한 경우의 개의 수감, 적절한 행동 훈련, 개와 아이들을 비롯한 외부인 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감독 등 고유한 책임 사항이 존재함을 인식하여야 하며, 개의 소유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책임임을 유념하여야 한다<sup>119)</sup>.

미국은 견주에 대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대상자는 1차적으로는 이미 개를 소유한 견주이고, 2차적으로는 새로운 개를 소유하고자 하는 자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수의사와 같은 개에 대한 의학지식을 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 동물관리관 및 법률전문가와 같이 법 위반시의 중대한 결과에 관하여 예상되는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논의되며, 이외에 지역 내의 개클럽, 애완동물용품이나 식품을 판매하는 전문업체, 정부나 주 소속의 동물보호소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견주가 개물림 예방 수업에 출석하는 것에 대하여 예방접종, 애완동물 식품 및 용품 내지 애견 훈련 수업에 대한 쿠폰 할인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 개물림 사고를 야기한 견주나 동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견주의 경우 사법부에 의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외에 책임감 있는 소유권을 강조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도록 하고 있다.<sup>120)</sup> 특히 최근에는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의 사이에 강

---

119)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Canine Aggression and Human-Canine Interactions, Id, pp. 1742-1743.

120)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Canine Aggression and

력한 유대감과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반려견을 동산으로 파악하는 현행법상의 해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는바,<sup>121)</sup> 그 반대방향인 견주의 특수한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2. 견주의 책임 - 민법 제759조와 견주의 중간적 책임 인정 여부

우리나라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견주의 책임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서는 명문으로 ‘소유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견주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과실책임보다 엄중한 중간적 책임에 해당하는 민법 제759조에서 동물의 직접점유자와 보관자에 대하여만 명문의 규율을 두어 견주가 동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직접점유자가 동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로서의 동물의 소유자, 즉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는 견주가 동물점유자에 대하여 책임의 주체에 포섭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첫째, 민법 제759조의 명문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동물을 점유하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이러한 직접점유자 외에 간접점유자는 별도로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sup>122)</sup> 둘째, 제759조에서의 점유자의 개념에는 물권법상 점유자에 대한 개념과 동일하게 파악하여 간접점유자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렇게 동물소유자가 간접점유자로서 동물에 대한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 대하여 동조를 통해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의 견지에서라도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sup>123)</sup>

---

Human-Canine Interactions, Id, p1743.

121) 최나진, “반려동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산정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2016. 9, 197-198쪽;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2012, 263쪽; 정문성,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2013, 212-213쪽.

122) 광운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X), 2005, 32쪽, 이영준, 앞의 논문, 86쪽.

123)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880쪽.

셋째, 민법 제759조의 점유자는 직접점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원의 지배 혹은 창설자라는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sup>124)</sup> 각 입장에 따라 견주의 책임에 대한 적용법조와 책임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첫 번째의 입장에서는 동물의 직접점유자가 아닌 간접점유자에 그치는 견주는 민법 제759조에 의한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다만 간접점유자인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반쪽,<sup>125)</sup>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입장에서는 견주도 민법 제759조에 의하여 동물의 보관상의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중간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sup>126)</sup>

동물을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향유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자는 일차적으로는 동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견주의 책임을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동물이 소유자의 집밖으로 일탈하는 경우나, 동물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거나 위임계약을 통하여 동물의 교육을 위하여 훈련소 등에 입소시키는 등으로 일시적으로 동물을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보관하는 자가 존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동물은 다시 소유자에게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물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동물과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동물의 소유자라는 점 또한 감안한다면, 견주에게도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중간적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

124) 윤석찬, 앞의 논문, 151쪽; 우리 민법 제759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규정의 입법은 독일 민법 제833조의 위험책임규정인 동물보유자의 책임법리에 바탕을 둔 것이고, 위험책임법리는 위험창출로 인한 위험지배와 그 위험으로부터의 이익향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125) 남기연,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승마장 사고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통권 제46호), 2016. 2, 145-146쪽.

126) 이러한 논의들은 2013년 민법 제759조의 개정시안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 제1안은 ‘동물 관리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동물의 관리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위험책임 일반에 관하여 인정되는 면책사유에 관하여 명문화하기도 하였다. : 이연갑, 앞의 논문, 248-249쪽, 255쪽.

다.<sup>127)</sup> 이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견주에게 엄격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인다. 그렇지만 현행법상 우리나라 민법 제 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을 나누어서 명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민법 제759조에서 그와 같이 동물의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명문의 규정상 견주가 민법 제759조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향후 민법의 개정을 통하여 미국의 일부 주에서의 법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견주와 같은 동물의 소유자도 민법 제759조에 의한 중간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sup>128)</sup>

한편 미국의 법제에서 피해자가 개에게 물리는 등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발생한 장소에 불법적으로 있었던 것이라면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두고 있는 부분이나, 견주가 명백히 보이는 표시로 개를 조심할 것이나 침입하지 말 것에 관한 내용을 하였다면 개 주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분명히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견주에게 책임을 경감시키도록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개물림 사고로 인한 견주의 민사책임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

127) 윤석찬, 앞의 논문, 149-150쪽, 즉, 동견해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보유자’의 개념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는 점을 들어 이를 동물의 소유자와 동시하여 동물의 소유자 역시 위험원의 지배자로서 동물을 지배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28) 참고로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동물보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민법 제 833조는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에 따라 이원적인 책임구조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유자의 직업, 영업활동 또는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동물에 의해 야기된 손해인 경우 동물보유자가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애완동물인 경우에는 동물보유자가 위험책임을 부담하여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즉, 생계활동을 위한 동물인 경우와 애완동물인 경우를 나누어 책임을 달리 규정한다(§833 Haftung des Tierhalters : Wird durch ein Tier ein Mensch getötet oder der Körper oder die Gesundheit eines Menschen verletzt oder eine Sache beschädigt, so ist derjenige, welcher das Tier hält, verpflichtet, dem Verletzten den daraus entstehenden Schaden zu ersetzen. Die Ersatzpflicht tritt nicht ein, wenn der Schaden durch ein Haustier verursacht wird, das dem Beruf, der Erwerbstätigkeit oder dem Unterhalt des Tierhalters zu dienen bestimmt ist, und entweder der Tierhalter bei der Beaufsichtigung des Tieres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beobachtet oder der Schaden auch bei Anwendung dieser Sorgfalt entstanden sein würde.).

으로 볼 수 있다.<sup>129)</sup>

### 3.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개정 동물보호법은 개의 종류를 분류하여 ‘맹견’을 중심으로 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만 다루고 있다.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이란 도사견, 핏볼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로 정의되는바(동법 제2조 제3의 2호), 이러한 위임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로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볼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테퍼스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를 들고 있다. 그러므로 현행법상의 ‘맹견’의 정의와 범위에 의한다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의 규율을 통하여 맹견의 종류를 구체적 상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형견이나 견종에 따라 대형견이라도 온순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분류되는 개의 경우는 해당 반려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대책은 다시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소유자등이 개에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행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머물게 된다. 한편 동법의 개정 전인 2018. 1. 18.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심의·확정하면서,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으로 분류하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면서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sup>130)</sup>

그러나 현실에 있어 개물림 사고는 맹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다수

129) 독일의 경우에는, 감독 의무의 성격과 정도가 동물의 특성과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소유주가 어린이의 동물 접근 관련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HK-BGB/Ansgar Staudinger, 6. Aufl. 2009, BGB §833 Rn11).

130) 2018. 1. 18.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3쪽.

이지만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한다. 전자의 사례로 가정집에서 탈출한 셰퍼드 한 마리가 기장역에 난입해 시민들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sup>131)</sup>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품종의 맹견 2마리가 집 밖으로 나와 주민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sup>132)</sup>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사례로 한식당의 대표가 연예인의 프렌치불독 품종인 반려견에 물린 후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을 들 수 있다.<sup>133)</sup> 즉, 외형상 크거나 험악하게 생긴 개는 위험하고 작고 연약하게 생긴 개는 위험하지 않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실제의 개물림 사고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도 ‘어떤 개가 개물림 사고를 야기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특정 품종에 의하여 개물림 사고가 촉발된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개물림 사고에 대한 통계만으로 그와 같은 단정을 짓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작은 품종의 개 역시 물기 성향이 있어 심한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이러한 품종이 대중들로부터 인기가 많다면 그 번식되는 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물릴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의 발현가능성이 높다. 즉, 개물림 사고의 원인은 특정 품종의 성향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에 의한 특정 개의 인위적인 번식을 통한 개체 수의 증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sup>134)</sup>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과 같이 외형과 개체의 성향에 의하여 분류된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향후에도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여 정책을 강화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대책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든다. 한편으로 개물림 사고만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특정한 종의 위험성을 강조하여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특정 동물의 복지를 해치는 위헌적 입법이

131) 2017. 1. 25.자 연합뉴스 기사, ‘기차역서 시민 공격한 목줄 없는 대형견 ... 주인은 어떤 책임 질까’

132) 2017. 7. 7.자 연합뉴스 기사, ‘사람 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 신고의무화 검토

133) 2017. 10. 26자 동아일보 기사, 강남구청, ‘개물림 사고’ 최시원父에 ‘과태료 5만원’ 처분

134)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Canine Aggression and Human-Canine Interactions, Id, p1733.

라는 반론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sup>135)136)</sup>

또한 미국 일부 주에서도 개물림 사고 혹은 위험성을 지니는 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관하여 단일한 법제 내에서 견주에 대하여 강도 높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고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에 야기하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국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향후 법제와 정책에 있어서는 개의 외형이나 성향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규율방식보다는, 근원적으로 대형견이든 소형견이든간에 견주의 기본적인 책임과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특별법과 일반법의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동시에 그 위반으로 인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법적 제재와 부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통해 개물림 사고의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증시할 필요가 있다.

---

135) 이른바 동물의 생명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의 복지에 대하여 논의하는 ‘동물권(animal right)’의 문제와 연계된다.;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2012, 20-21쪽,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 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16, 40-41쪽, 동물복지에 입각하여 1800년대에 동물학대금지법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함태성,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동물학대금지외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5. 8, 341-344쪽.

136) 2018. 2. 1.자 연합뉴스, 동물단체 ‘반려견 높이 40cm 넘는다고 입마개 씌우면 부당’;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체고(발바닥에서 어깨뼈까지 높이)가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하고 입마개를 씌우도록 한 정부의 규제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88명의 법률검토 결과 체고를 기준으로 한 규제는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행정입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모법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이를 벗어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참고문헌

- 김상훈, “현행 민사법 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홍익법학』 제 16권 제1호, 2015.
- 남기연, “동물 점유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 승마장 사고를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1호(통권 제46호), 2016.
- 박정기,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2012.
- 배기석·배소민,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의 한·일 판례 동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4531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53권 제2호, 2012.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8.
-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X), 2005.
- 양창수, “동물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 『저스티스』 제82호, 한국법학원, 2004.
- 윤동호, “과실치상죄의 학설과 판례 검토-일상생활 중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상해사건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 『형사법연구』 제 30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8.
- 윤석찬, “동물점유자의 책임법리와 개정론”, 『재산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2.
- 윤익준, “동물의 지위에 대한 법 정책적 담론 - 현행법상 동물의 보호와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 『법과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2016.
- 윤철홍,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개정시안”, 『재산법연구』 제29권 제 3호, 2012.
- 이연갑, “민법 제759조의 개정 논의에 관한 소고”, 『민사법학』 제63권 제1호, 2013.
-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17.

정문성,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법률실무연구 제1권 제2호, 2013.

최나진, “반려동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산정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6권 제3호, 2016.

함태성, “미국 동물법의 동향과 쟁점에 관한 연구 - 동물학대금지의 형사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5.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Canine Aggression and Human-Canine Interactions, “A community approach to dog bite prevention”, *JAVMA*, Vol 218, No. 11, June 1, 2001.

Rebecca F. Wisch and Diamond Conley, Table of Dog Bite Strict Liability Statutes,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Law, Animal Legal & Historical Center, 2017.

HK-BGB/Ansgar Staudinger, 6. Aufl. 2009

2018. 1. 18.차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18. 2. 28.차 제356회 국회본회의회의록

##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경향이고, 특히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상(死傷)을 입히는 인신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미국에서 소위 ‘개물림(Dog-bite) 사고’라고 지칭되는 인신사고이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공중 보건의 문제이자 지역사회에도 측정하기 어려운 숨은 비용을 양산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동물보호법, 민법, 형법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특히 2018. 3. 20. 동물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맹견의 견주 등에게 강화된 주의의무와 처벌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개물림 사고에 대하여 단일법에서 개 혹은 동물의 유형, 손해의 형태, 손해의 배상범위, 책임 인정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관한 다양한 법제를 지니고 있는 미국 일부 주의 법제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개물림 사고에서 특히 견주의 책임에 대한 현행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및 그 보완을 위한 대책으로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개물림 사고, 반려견,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과실치사상죄, 동물보호법

## A Review of the Legal Responsibility of Dog Owner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 Focused on a Comparison with American Dog Bite Legislation -

Baek, Kyoung-Hee\* · Shim, Young-Joo\*\*

In South Korea, the number of households that rear companion animal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With the rise of household dogs, the frequency of humans that are being bitten by another's dog has also increased. This type of accident, which is known as a dog bite accident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t can cause significant physical and emotional damage to the victims and may result in grave injuries or death. Dog bite accidents are serious public health problems and can cause immeasurable hidden costs to the community.

South Korea has enacted several laws to address dog bite accidents, which include the Animal Protection Act, the Civil Act, and the Criminal Act. On March 20, 2018, the Animal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reinforce the current legislation. These amendments addressed the duty of care owed by a companion dog owner to society members and the punishment that an owner of a fierce dog would face in the event of a dog bite accident. Conversely,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have enacted a single law that regulates the details regarding dog bite accidents, such as the type of dog or animal, the type of damage, the scop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liabilities.

This paper is intended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of dog bite legislation in several states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ve a variety of laws that address dog bite accidents, and compare them with current South Korean dog bite legislation. Through this research, this paper will discuss

---

\* Prof. Inha University, First Author

\*\* Lecturer. Inh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what issues may exist in South Korean's current dog bite laws, analyze the responsibility of companion dog owners, and provide solutions to any issues that are discovered.

**Key Words :** Dog-bite Accident, Companion Dog, Liability of Possessor of Animals, Bodily Injury or Death by Negligence, Animal Protection Act.

